

파주 운정신도시 중흥S-클래스 2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

대상자

-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(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, 재혼포함)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*)으로서 「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
- 단, 혼인기간 중 2018.12.11. 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
-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,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, 임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(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) 등으로 확인
-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(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,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, 허위 임신,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.(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- 소득기준 :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(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 기준의 140%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

선정방법

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2021.02.02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%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에게 우선공급하며, 나머지 주택(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.)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(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)합니다.
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
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,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.
 - ① 제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(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)하여 자녀가 있는 자[「민법」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(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)를 포함]
 - *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(입양포함)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
- ② 제2순위 :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→ 무자녀 또는 2018.12.11.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

■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

-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(제 2순위 동일)
 -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30%,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20%, 수도권(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 6개월 미만)내 거주한 자 50% 순으로 우선공급
 - ②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 수가 많은 자
 - *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서 출산 · 입양한 미성년자녀(전혼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.
- ③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

*※ 입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,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(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, 입신부부의 입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피양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■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(해당자)			
공통 서류	0		무주택서약서	본인	■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0		신분증	본인	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	0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■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로 발급
	0			배우자	■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0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(워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로 발급
	0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0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■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0		복무확인서	본인	■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
신혼부부 특별공급	0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■ 혼인신고일 확인
	0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■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
	0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■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(단,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)[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]
	0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자녀	■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0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■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
	0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■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■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0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■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0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■ 입양의 경우
	0		비사업자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■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
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	0		무주택 소명 서류	해당 주택	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■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■ 소형·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■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0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■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0		인감증명서	청약자	■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첨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0		인감도장	청약자	■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0		위임장	청약자	■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0		신분증	대리인	■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* 삼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삼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.(※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)

*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* 주민등록표등본·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「주민등록번호」, 「세대주 성명 및 관계」, 「주소변동이력」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고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

-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
■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
공급유형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
		3인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소득, 7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393,647원	7,778,023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 120% 이하	6,030,161원~ 7,236,192원	7,094,206원~ 8,513,046원	7,094,206원~ 8,872,376원	7,393,648원~ 9,333,628원	7,778,024원~ 9,794,879원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, 3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~ 140% 이하	6,030,161원~ 8,442,224원	7,094,206원~ 9,931,887원	7,094,206원~ 10,351,106원	7,393,648원~ 10,889,232원	7,778,024원~ 11,427,359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초과~ 160% 이하	7,236,193원~ 9,648,256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872,377원~ 11,829,835원	9,333,629원~ 12,444,837원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30%(상위소득)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를 선택하셔야 합니다.
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
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[※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 제출 시]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		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[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매월신고 납부대상 자확인으로 발급)]	- 해당직장 - 세무서			
	신규취업자	-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- 재직증명서	- 해당직장			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- 사업자등록증	- 세무서			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-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				